목 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2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3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4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4
가. 권유기간 4
나. 피권유자의 범위 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5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5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5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6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6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6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6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6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8
□ 정관의 변경 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8 월 12 일

권 유 자:	성 명: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 소:경기 과천시 코오롱로11 전화번호:032-420-9111
작 성 자:	성 명:채홍환 부서 및 직위:커뮤니케이션팀/대리 전화번호:02-3677-440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2년 08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2년 08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2년 08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보통주	84,095	0.33	본인	자기주식으로 의결권 없음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84,095주, 우선주 4,722주 입니다.
※ 주식 소유 비율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25,210,438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오롱	최대주주	보통주	18,964,708	75.23	최대주주	-
오운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130,205	0.52	재단	-
이웅열	기타	보통주	96,522	0.38	기타	-
박문희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233	0.00	발행회사 임원	-
이인성	계열사임원	보통주	381	0.00	계열사임원	-
김응옥	계열사임원	보통주	492	0.00	계열사임원	-
김영범	계열사임원	보통주	787	0.00	계열사임원	-
이일우	계열사임원	보통주	700	0.00	계열사임원	-
류재익	계열사임원	보통주	2,117	0.01	계열사임원	-
김기덕	계열사임원	보통주	489	0.00	계열사임원	-
이재혁	계열사임원	보통주	335	0.00	계열사임원	-
조현철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156	0.00	발행회사 임원	-
강창희	계열사임원	보통주	655	0.00	계열사임원	-
김문수	계열사임원	보통주	900	0.00	계열사임원	-
안병덕	계열사임원	보통주	14,186	0.06	계열사임원	-
김종하	계열사임원	보통주	2,251	0.01	계열사임원	-
전태희	계열사임원	보통주	292	0.00	계열사임원	-
서정민	계열사임원	보통주	356	0.00	계열사임원	-
정사환	계열사임원	보통주	4,101	0.02	계열사임원	-
계		-	19,220,866	76.2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형근	보통주	0	직원	직원	-
황인식	보통주	0	직원	직원	-
권태은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우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견다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채홍환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8월 18일	2022년 08월 31일	2022년 08월 3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8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2년 8월 21일(일) 09시 ~ 2022년 8월 30일(화)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longlobal.com	홍보센터→공지 및 뉴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및 팩스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주소 : (13837)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코오롱글로벌 커뮤니케이션팀 · 업무상 연락처 : (TEL) 02-3677-4405 (커뮤니케이션팀 권태은 대리) (FAX) 02-3677-563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2년 8월 31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3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2년 8월 21일(일) 09시 ~ 2022년 8월 30일(화)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

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이사회 결의에 의거,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총회장 장소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7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전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제7조의2(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전환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	- '종류주식'→'1종 종류주식' 으로 명칭변경 - 발행 한도 변경(상법 제344조의3 제2항 반영) -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끔 조문 변경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조문 순서 변경

제7조의3(상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제7조의2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식 수와의 합계가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이하 “상환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3%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제7조의2 및 부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④ 상환우선주식에 있어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배당하지 아니한다. ⑤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⑥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중략>	제7조의3(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무의결권 상환우선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2종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및 부칙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④ 2종 종류주식에 있어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배당하지 아니한다. ⑤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⑥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상환우선주식'→'2종 종류주식'으로 명칭변경 - 발행 한도 변경(상법 제344조의3 제2항 반영) - 보수적으로 산정한 배당률 변경 - 조문 신설에 따라 반영

⑫ 본조에 의한 상환우선주식 발행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조건(전환가액의 조정을 포함한다)과 전환청구 시점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⑬ 상환우선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⑫ 본조에 의한 2종 종류주식 발행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조건(전환가액의 조정을 포함한다)과 전환청구 시점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⑬ 2종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 조문 순서 변경

- 신설	제7조의4(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우선주에 대한 조문 신설

제12조(주권의 불소지신고) ① 주주가 해당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이미 발행한 주권이 있을 때는 신고 시에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주권은 무효로 한다. ③ 전 각항의 주권 불발행신고가 있었더라도 주주의 필요에 따라 주권의 재발행 및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재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 삭제	-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문삭제
제13조(주식의 양도)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삭제	-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문삭제
제8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8조의3(동등배당)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제10조(주주명부의 작성 비치) 제11조(주금의 납입)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제10조(동등배당)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주주명부의 작성 비치) 제13조(주금의 납입)	- 법 조문 순서 변경(내용동일)
제47조의3(부칙) ②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회사가 개정상법 시행일(1996년 10월 1일)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률+1%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제47조의3(부칙) ② 삭제	- 금번 정관 개정시 제7조의4를 신설하므로 실효성 없는 부칙은 삭제

- 신설	제47조의26(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사가 1996년 10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상법(법률 제5053호)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배당률+1%추가 현금배당 우선주식을 의미하며 “기존 우선주식”)과 제7조의4에서 규정한 우선주는 동일한 우선주로서, 기존 우선주식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 제7조의4에서 규정한 우선주로 발행된다. 부칙 제47조의3 제2항을 폐지한다.	-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